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20.3.31.)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를 하는 대신에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대한민국명장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처분 기준 등에 대하여 법 개정 내용의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명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 (안 제13조제3항 개정, 제13조 제5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이하 “계속종사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이 중단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지
2.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지급 중단 결정일부터 지급 중단하기로 결정된 기간 동안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지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이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여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2.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또는 3년간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3.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이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4. 위반의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인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 ② (생략)	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되거나 <u>법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이하 “계속종사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이 중단된 사람에게</u>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지 2. <u>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지급 중단 결정일부터 지급 중단하기로 결정된 기간 동안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지</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이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

를 하여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계
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2.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명장 선정 취소 또는 3년간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3.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
실이거나 위반이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 1년 이
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4. 위반의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인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계속
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연 락 처	(044) 202 - 7299